

#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687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3. 15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3. 1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3. 24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개정이유

-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이중 규제하고 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문을 폐지 또는 개정함으로써 보조금운영 내실화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

### 3. 주요골자

가. 보조금신청 조문 개정(안 제5조)

나. 보조금 교부조건 삭제(안 제7조제2항)

다.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조문개정(안 제12조제1항)

라.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조문 개정(안 제17조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보조금의 교부조건은 상위 법령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이중 규제하고 있어 행정규제개혁 정비차원에서 이를 정비함과 아울러
- 동 조례 제5조와 제8조에 명시된 내용중 일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것은 보조금 운영의 내실화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1. 3.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